|  |  |  |
| --- | --- | --- |
| **“中國”이란 단어를 포함하거나**  **“國”자로 시작하는 상표의 심사기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2010년 7월 28일  상표 심사기준을 일층 더 규범화하고 상표 심리업무를 잘 처리하여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가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포함한 상표의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다.  **제1부분 법적 의거**  우리나라 국가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포함한 상표 출원은 《상표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하며 그 구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법》제10조. 아래의 표식은 상표에 사용하지 못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 및 중앙 국가기관 소재지 특정지점의 명칭 또는 상징적인 건축물 명칭, 도안과 동일한 표식.  (2) 외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 단, 당해 국가정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정부간 국제기구의 명칭, 깃발, 마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 단, 당해 기구의 동의를 얻었거나 공중의 오해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과대선전이나 기만성을 띤 표식.  (8) 사회주의 도덕풍기를 해치거나 기타 불량한 영향이 미치는 표식.  2. 《상표법》제11조. 하기 표식은 상표로 등록하지 못한다.  (1) 당해 상품의 통용명칭, 도안, 사이즈만으로 구성한 표식.  (3) 뚜렷한 특징이 없는 표식.  **제2부분 “中國”이란 단어를 포함한 상표의**  **심사기준**  우리나라 국가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포함한 상표 출원은 출원인과 상표가 하기 4개 조건에 동시에 부합되어야 초보적인 심사를 실시한다.  1. 출원인의 주체자격은 반드시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수권한 기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되어야 한다. 출원인의 명칭은 명칭 등록기관에 의해 의법 등록되어야 한다.  2. 출원 상표가 출원인의 기업명칭이나 그 명칭의 약칭과 일치하며, 그 약칭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수권한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출원 상표와 출원인 주체 지간에는 긴밀한 대응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출원 상표의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 범위는 그 경영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제3부분 “國”자로 시작하는 상표의**  **심사기준**  “國”자로 시작하는 상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1. “國+상표의 지정상품 명칭”의 상표를 출원하거나 상표에 “國+상표의 지정상품 명칭”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과대선전과 기만성을 띤” 경우, “뚜렷한 특징이 결여한” 경우, “불량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기각한다.  2. “國”자로 시작하지면 “國+상표의 지정상품 명칭” 조합이 아닌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는 상황을 구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지정상품에 사용되며, 직접 상품의 품질, 특징을 표시하거나 기만성이 있으며 심지어는 공평경쟁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정치면에서 불량한 영향을 초래하기 쉬운 경우에는 기각한다.  상술한, “中國”이란 단어를 포함하였거나 “國”자로 시작하는 상표는 엄격히 심사하고 신중성을 가하여 관련 심사부처의 업무회의, 상표국 심사업무회의, 상표국 국장업무회의 또는 상표심사위원회 회의에서 토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상표 출원인은 상표 출원절차에서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 **含“中国”及首字为“国”字**  **商标的审查审理标准**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商标局  2010年7月28日  　　为进一步规范商标审查标准，做好商标审理工作，服务企业，促进加快经济发展方式转变，根据商标法及有关法规的规定，经研究，现对含有与我国国家名称相同或者近似文字的商标的审查标准明确如下：  **第一部分 法律依据**  　　对含有与我国国家名称相同或者近似文字的商标申请应当依照《商标法》相关规定进行审查，具体为：  　　一、《商标法》第十条 下列标志不得作为商标使用：  　　（一）同中华人民共和国的国家名称、国旗、国徽、军旗、勋章相同或者近似的，以及同中央国家机关所在地特定地点的名称或者标志性建筑物的名称、图形相同的；  　　（二）同外国的国家名称、国旗、国徽、军旗相同或者近似的，但该国政府同意的除外；  　　（三）同政府间国际组织的名称、旗帜、徽记相同或者近似的，但经该组织同意或者不易误导公众的除外；  　　（七）夸大宣传并带有欺骗性的；  　　（八）有害于社会主义道德风尚或者有其他不良影响的。  　　二、《商标法》第十一条下列标志不得作为商标注册：  　　（一）仅有本商品的通用名称、图形、型号的；  　　（三）缺乏显著特征的。  **第二部分 含“中国”字样商标的审查**  **审理标准**  　　对含有与我国国家名称相同或者近似文字的商标申请，申请人及申请商标同时具备以下四个条件的，可予以初步审定：    　一、申请人主体资格应当是经国务院或其授权的机关批准设立的。申请人名称应经名称登记管理机关依法登记。  　　二、申请商标与申请人企业名称或者该名称简称一致，简称是经国务院或其授权的机关批准。  　　三、申请商标与申请人主体之间具有紧密对应关系。  　　四、申请商标指定使用的商品或服务范围应与核定的经营范围相一致。  **第三部分 首字为“国”字商标的审查**  **审理标准**  　　首字为“国”字商标的，应当严格按照以下标准审查：  　　一、对“国+商标指定商品名称”作为商标申请，或者商标中含有“国+商标指定商品名称”的，以其“构成夸大宣传并带有欺骗性”、“缺乏显著特征”和“具有不良影响”为由，予以驳回。  　　二、对带“国”字头但不是“国+商标指定商品名称”组合的申请商标，应当区别对待。对使用在指定商品上直接表示了商品质量特点或者具有欺骗性，甚至有损公平竞争的市场秩序，或者容易产生政治上不良影响的，应予驳回。  　　对于上述含“中国”及首字为“国”字商标的审查，应当从严审查，慎之又慎，通过相关审查处处务会、商标局审查业务工作会议、商标局局务会议或者商标评审委员会委务会议研究决定。  　　在商标注册申请程序过程中，商标申请人可以提交相关证明材料。 |